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37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 박정하·진종오·이종욱

조은희 • 신성범 • 이인선

김용태 · 조지연 · 정성국

김형동 · 김상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민간 자율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 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지정 기간과 요건을 두고 있음.

한편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등).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으로 하고, "매출액"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0호 중 "이행할 것"을 "이행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지정 신청 시기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의6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①
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	
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	
업자로 <u>3년</u> 이내의 기간을 정	<u>5년</u>
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	
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	
정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	<u><삭 제></u>
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	
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②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게임제작업, <u>게임배급업</u>	가 <u>게임배급</u>
<u>또는 게임제공업</u> 을 영위하	업, 게임제공업 또는 「전
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	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균 <u>매출액</u> 이 문화체육관광	<u>따른 부가통신사업</u>

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상일 것

나. ~ 다. (생 략)

- 2. ~ 5.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저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 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9. (생략)
 -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단서 신설>
 - 11. · 12. (생략)
 - ② ~ ④ (생 략)
- 재지정) ① (생 략)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u>매출액 또</u>
는 자본금
나. ~ 다.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세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1.~ 9. (현행과 같음)
10
이행할 것. 다만, 재지정 신청
시기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 11. 1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① (현행과 같음)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